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호대 의원 외 13명
- 나. 의안번호: 제1097호
- 다. 발의일자: 2019. 10. 16.
- 라. 회부일자: 2019. 10. 22.

2. 제 안 사 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현행 조례는 공항 주변 주민들이 겪는 항공기소음 피해 보상을 위해 항공소음 영향도 (WECONL) 75 이상인 지역을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 피해에 따른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다만, 항공소음 영향도가 70 이상 75 미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비슷한 정도의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김포공항 주변지역 내 항공소음 영향도 70 이상 75 미만의

소음대책 인근지역(구로동, 공항동, 가리봉동, 가산동 등)을 공항소음 방지 및 피해지원 대상으로 포함·확대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각종 주민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또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치구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제명과 목적에서 공항소음대책지역에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추가하여 변경함(제명 변경).
- 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정의하고,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이를 반영함
(안 제2조제3호,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
- 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제2항).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 받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주민지원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관련 규정

-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¹⁾과 소음대책인근지역²⁾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75%와 구비 25%를 지원하고 있음.

1) 「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소음영향도(WELPNL, 웨클) 75이상의 지역(양천구 신월동 다수, 구로구 고척동 다수, 강서구 공항동과 화곡동 일부)

2)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영향도(WECPNL, 웨클) 70이상 75미만의 지역(양천구 신정동 다수, 구로구 가리봉동 및 개봉동 다수, 강서구 공항동, 화곡동 다수, 금천구 가산동 및 독산동 일부)

<2018년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구분		계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개소	백만원	
소계		108,722	26,385	82,738	19,680	25,942	6,683	42	22	-	-	
소음대책사업	주택	방음시설	23	818	18	670	4	131	1	17	-	-
		냉방시설	3,930	10,006	3,809	9,693	121	313	-	-	-	-
	학교	방음시설	-	-	-	-	-	-	-	-	-	-
		냉방시설	1	3,190	-	-	1	3,190	-	-	-	-
	공영방송 수신료		48,670	1,470	36,616	1,108	12,036	361	18	1	-	-
	전기요금지원	학교	41	553	31	394	10	159	-	-	-	-
일반주민		56,057	10,348	42,264	7,815	13,770	2,529	23	4	-	-	
주민지원사업	소계	33	11,063	6	7,387	21	2,609	3	888	3	179	
	국비	-	8,160	-	5,540	-	1,875	-	616	-	129	
	구비	-	2,903	-	1,847	-	734	-	272	-	50	
합계		37,448백만원		27,067백만원		9,292백만원		910백만원		179백만원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인근지역 현황>

구 분	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인근지역
근 거	<p>공항소음방지법 제2조제2호 <u>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u>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u>소음영향도(WECPNL, 웨클) 75이상의 지역</u></p>	<p>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제2항 <u>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영향도(WECPNL, 웨클) 70이상 75미만의 지역</u></p>
해 당 지 역	<p>양천구(신월동 다수) 구로구(고척동 다수) 강서구(공항동, 화곡동 일부)</p> <p>※ (면적) 13.1km², (가옥수) 45,715호</p>	<p>양천구(신정동 다수) 구로구(가리봉동, 개봉동 다수) 강서구(공항동, 화곡동 다수) 금천구(가산동, 독산동 일부)</p> <p>※ (면적) 13.4km², (가옥수) 71,551호</p>
국 가 (공항공사) 지원 사항	<p>소 음 대 책 사 업</p> <p>법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손실보상 및 토지 등의 매수 등 <p>※ 국비 100% 지원</p>	<p>< 해당사항 없음 ></p>
	<p>주 민 지 원 사 업</p> <p>법 제1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p>-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p> <p>※ 국비 75%, 구비 25% 지원</p>	<p>< 좌 등 ></p> <p>※ 법 제18조제2항 <u>소음대책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하 "소음대책인근지역") 을 주민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u></p>
서울시 지원 사항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지원사업(조례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접수 및 처리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홍보 등 ○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조례 제4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지원사업 위탁 관리 	<p>< 해당사항 없음 ></p>

2)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제3호 및 제4호, 제3조, 제4조제1항)

- 서울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과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공항소음 조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공항소음 조례」는 소음대책지역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 소음 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조례 규정 없이 「공항소음방지법」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공항소음 조례」에 공항소음대책인근지역 및 이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안 제5조 및 제7조)

- 안 제5조와 제7조는 주민지원사업을 현행 민간위탁³⁾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탁이 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구청장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안 제6조제2항)

- 안 제6조제2항은 시장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4)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공항공사, 75%)을 지원받아 구청장(25%)이 시행하고 있는 바, 시가 구청장에게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치구의 재정사정, 지원대상의 성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임.

<주민지원사업비 집행현황('18년 기준)>

자치구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공항공사)	구비
합계	11,063	8,160	2,903
양천구	7,387	5,540	1,847
구로구	2,609	1,875	734
강서구	888	616	272
금천구	179	129	50

4)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특별시·광역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